

---

문서번호	
제정일자	2020.05.22
개정일자	2021.12.09
개정번호	R2

## 윤리강령 실천지침

## 제·개정이력

---

# 목 차

제1장 총칙

제2장 실천지침

---

# 윤리강령 실천지침

제정 2020.05.22.  
개정 2021.12.09.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(주)아스플로(이하 회사라 한다.)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

**제2조(방침)** 이 지침은 구성원이 "윤리강령"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한다.

**제3조(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)** 구성원은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
- 01) 금품 : 금전(현금 및 상품권, 이용권 등 유가증권 포함), 선물(물품), 경조금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
- 02) 향응, 접대 : 식사, 주연, 골프, 공연, 국내·외 관광,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
- 03) 편의 : 금품수수, 향응·접대 이외의 교통, 숙박,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의미
- 04) 이해관계인 :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(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)
- 05) 이해관계자 :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(고객, 구성원, 주주, BP, 지역사회, 국가 등)
- 06) 공금 횡령 :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
- 07) 공금 유용 :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
- 08) 기물 유출 : 회사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
- 09) 타용도 사용 :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, 기계, 자재,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
- 10) 업무태만 : 직위,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- 11) 근태불량 : 고의적,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처리를 하는 행위
- 12) 관리감독 소홀 :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- 13) 불합리한 업무처리 :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,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또는 방조 혹은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
- 14) 월권행위 : 직위,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
- 15) 성희롱 :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

**제4조(교육)** 경영지원팀은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징계)** 1. 구성원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주었거나,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영지원팀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2. 징계위원회에 대한 사항

---

---

은 '징계규정'을 따른다.

## 제 2 장 실천지침

**제6조(금품)** 1. 이해관계자 특히, BP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하며, 제공해서도 안 된다. 단,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은 제외한다. 2.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선물반송센터에 신고해야 한다. 3.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BP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. 단, 모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**제7조(향응·접대)**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 단,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.

**제8조(편의)**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 단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
**제9조(미래에 대한 보장)**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고용, 취업 알선,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.

**제10조(부채의 상환 또는 보증)**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이해관계인, 또는 구성원들의 부채(카드대금, 외상값, 대출금, 이자 등)에 대한 결제, 상환 및 대출 보증(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)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.

**제11조(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)**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다음 각 호의 상황으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01)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또는 친인척(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)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
- 02) 본인 또는 친인척의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
- 03) 본인 또는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BP나 대리점/판매점 운영을 통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
- 04) 본인 또는 친인척이 BP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친인척 등이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

**제12조(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, 공동 재산 취득)**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, 부동산 등의 자산(콘도미니엄, 골프/헬스클럽 회원권,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)을 취득할 수 없다. 비록 타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13조(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지분 수수)** 이해관계자에게 동산,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.

**제14조(금전 등의 자산 대차)**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,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된다.

---

**제15조(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)** 1. 회사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, 공금 유용, 기물 유출, 타 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2.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·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 3.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, 기술, 영업비밀,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
**제16조(비공개정보 사적 이용)**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 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**제17조(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)**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BP, 투자회사에 투자 할 수 없다. 단, "주식 등의 투자승인 신청서"를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**제18조(타회사 임직원 겸임)**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은 할 수 없다. 단,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경우 투자회사, 관계사의 겸임은 가능하나 겸직으로 인한 보수 발생 시에는 경영지원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.

**제19조(외부 강의)**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상사(회사)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20조(회사인력 유출)** 구성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,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헤드헌터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**제21조(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)**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, 계수 등을 조작 또는 변조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**제22조(업무태만 및 근태불량)** 구성원은 업무태만, 근태불량, 관리감독 소홀, 불합리한 업무처리,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**제23조(성희롱, 구성원간 부당행위)** 구성원은 성희롱, 차별대우,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, 폭행,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**제24조(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)** 1.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,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 2. 법률,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(도박, 불륜, 성범죄, 폭력, 사기 등)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---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